



다른 이용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인터넷서 판매자 비난해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구매자가 자신이 구입한 상품과 판매자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평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다른 이용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라면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부는 2009년 12월 10일 안경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비인기 물품을 좋은

모델로 과대 포장해 카페에서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만으로는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박 씨가 글을 게시한 경위나 해당 사이트 개설 목적, 공표 범위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글쓰기 좋아하는 장사꾼이 광고 잘해서 틈새를 파고들어 운영하는 곳’, ‘막장 판매자’ 등의 표현

에 대해서도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남대문의 한 상점에서 구매한 안경의 품질에 불만을 품고, 한 인터넷 정보 사이트에 안경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표현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책비판은 언론 자유에 속해 ... MBC 'PD 수첩' 형사사건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는 1월 20일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 “보도의 전체 취지를 감안하면, 일부 세세한 점에서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보도내용인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여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로 인한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협상단의 미국 도축시스템 실패 부실 파악 등에 대해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MM형 유전자를 가진 한국인이 94%이므로 광우병 발병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고,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책 책임자들의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당해 정책에 관련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정책관 및 쇠고기 수입업자들은 PD 수첩 제작진이 잘못된 보도로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앞서 광우병 보도 관련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서울고법은 2009년 6월 17일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거부 의사 있어야 처벌 안 돼

‘반의사불벌죄’ 처벌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은 1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며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동생이 사는 빌라 현관에 동생이 화창시절 자전거를 훔친 것과 군복무 중 의무대 선임하사에게 돈을 주고 의병(依病) 제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붙여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1,2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되었다며 항고했다.

이 씨 동생은 경찰진술에서 형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하겠다고 했다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겠다고 번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형이 집에 찾아와 내게 상해를 가한 것만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4천만 원 벌금형

故 최진실 사망 전에 ‘최진실 사채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백 모 씨에게 4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2009년 12월 11일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은 최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악

성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있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징역형을 깨고 벌금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쪽지를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 씨에게 대한 명예훼손 외에 자살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진실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감형 사유에 포함됐다.

피고 백 씨는 지난해 9월 ‘충격적인 사실, 최진실 안재환 사채 관련 의혹’이라는 제목의 쪽지를 인터넷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중요 부분 사실일 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1월 31일 인터넷 카페에 동료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단과 관련하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글을 올린 주요 목적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료 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시키는 결정을 하면서 이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동료 교수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성질

에 비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부내용에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각각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에의동향

[일본동향] 한동원 전 언론연구원장

일본법원, 사형판결 받고 상고중인 소년의 실명이 기재된 단행본 출판금지청구 각하

일본에서는 최근 사형판결을 받고 상고중인 소년법의 실명이 기재된 단행본의 출판금지청구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범죄의 실명보도 등을 금지한 소년법 61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우려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신문협회보(2009년 11월 17일자)에 의하면, 히로시마(廣島)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11월 9일 1999년에 발생한 야마구치현 히카리시(山口縣 光市) 모자(母子)살해사건과 관련, 사형판결을 받고 상고중인 사건 당시 18세(현재 28세) 소년의 실명이 기재된 단행본의 출판금지청구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출판에 의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각하했다.

「00(사건 당시 소년의 실명)군을 죽여서 무엇이 남는가-히카리시 모자살해사건의 합정」이라는 제목의 이 서적에는 저자인 잇쿄대학(一橋大學) 직원 마쓰다미치코(増田美智子)가 이 소년과 주고 받은 편지, 소년의 중학생시절의 얼굴사진, 관계자의 발언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쓰다 씨는 실명으로 한 이유에 대해 「이름이나 얼굴사진이 없으므로써 몬스터(monster) 같은 이미지로 부풀려져, 그것이 사형을 바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청구인측은 「소년법 6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성장발달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등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으며,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아, 중지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소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출판을 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측은 「청구인측은 실명을 승낙했으며, 사전에 보여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반론하고 「실명은 잡지 등에 보도된 '공지의 사실'로 책 내용은 사회의 정당한 관심사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명을 선정적으로 사용했다는 감을 지울 수 없으며, 편지나 얼굴사진의 게재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년법 61조와 관련하여 오사카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살인사건으로 당시 19세였던 피고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한 신조사(新潮社)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년법 61조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실명으로 보도되지 않을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도쿄지법, 저작권침해 가능성 인식하면서 삭제조치 취하지 않은 동영상(動畫)사이트에 손해배상 명령

투고된 동영상(動畫)파일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주체는 이용자」라는 주장을 물리치고 「사이트 내에서 행하여지는 복제, 공중송신의 주체는 운영회사이며,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서의 발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서 나왔다.

신문협회보(2009년 11월 24일자)에 의하면, 도쿄지법은 지난 2009년 11월 13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동

영상(動畫)투고 사이트 「TV브레이크(ブレイク)」를 운영하는 「저스트온라인(ジヤストオンライン)」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동사에 대해 대표이사과 연대하여 8,900만엔을 지불하고, JASRAC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포함한 동영상파일 약 20,000곡 분의 송신 금지를 명했다.

TV브레이크는 이용자가 회원으로 등록한 후, 「애니메이션」, 「음악」, 「무비」 등 25항목 중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동영상파일을 투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투고된 동영상파일에 대해 「어렵 잡아 침해율을 계산해도 49.51%로 약 5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극히 크다는 인식을 하면서 삭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영상(動畫)투고 사이트 「유튜브(Youtube)」등은 이미 JASRAC와 악곡(樂曲)을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보도실현권’ 2심에서도 청구 기각

취재, 집필한 원고가 게재되지 않아 기자의 권리가 부정되었다고 전 朝日(아사히) 신문 기자 吉竹幸則 씨가 朝日신문사를 상대로 사죄 기사 게재와 위자료 3,000만 엔의 지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나고야고등법원은 지난 9월 2일 “기자에게는 원고를 게재하도록 신문사에 요구할 권리는 없

다”며 1심(언론중재 2009년 가을호 96쪽 참조)과 동일하게 청구를 기각했다.

요시다케 씨는 신문이 자신이 쓴 원고를 게재하지 않자 ‘보도실현권’(報道實現權)이 침해되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신문사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원고를 게재할 의무가

있으며 제소했다.

재판부는 “편집권은 신문사의 경영, 편집 관리자에게 있으며 기자의 원고나 취재결과는 소재(素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각사의 편집방침에 따른 신문보도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있다”고 판시, 보도실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동향] 주재원 통신원, 런던정경대학(LSE) 언론학 박사과정

동성애 인권지지자들의 불만신청 기각되자 PCC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들끓어

2009년 10월 10일, 아일랜드 출신의 밴드 boyzone의 전 멤버였던 Stephen Gately의 죽음(당시 33세)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음악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Gately는 boyzone 멤버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1999년 스스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일부 보수 언론과 타블로이드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메이커가 되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에는 그의 동성애 파트너인 Andrew Cowles와 함께 동성애 권리조합에 가입함으로써 Elton John, David Furnish 커플과 더불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성애 권리 운동가가 되었다.

다음날인 2009년 10월 11일, 영국의 일간지 Daily Mail의 칼럼니스트 Jan Moir가 기고한 『A strange, lonely and troubling death...』라는 사실은 이미 사자(死者)가 된 Gately를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왔다. Moir의 사실은 시종일관 Gately의 죽음을 동성애와 연관시키면서, 33세의 매력적인 젊은이가 동성애라는 너저분한(sleazy) 쾌락주의적(hedonistic) 삶에 빠진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요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실은 Daily Mail의 인터넷판에서 약

일주일 동안 최다 검색 기사로 기록되었으며, 1600여개의 댓글이 달릴 만큼 동성애 관련 논쟁을 뜨겁게 달구었다.

Gately의 동성애 파트너였던 Cowles는 곧바로 Daily Mail과 Moir에 항의의 뜻을 밝히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기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Daily Mail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Cowles는 2만 5천명(역대 최다 언론불만신청인)의 동성애 인권 지지자들과 함께 PCC(Press Complaint Commission)에 중재 요청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결정이 2010년 2월 19일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PCC는 결정문을 통해 “Cowles와 2만 5천명의 동성애 인권 지지자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보다 넓은 차원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식적으로는 불만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CC는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때로는 언론의 보도가 일부 단체나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위에 거슬릴 수도 있으며, 그럴 때마다 언론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칫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둔 결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PCC의 결정은 오히려 더욱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일부 매체는 PCC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며, PCC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일간지 The Guardian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TPCC(Toothless PCC)라는 용어를 이용해 PCC의 이번 결정이 매우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비꼬았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Gary Nunn은 그의 기사를 통해 PCC의 이번 결정이 언론을 시궁창(gutter)에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탄광을 소유한 회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안전하지도 청결하지도 않은 작업장에서 일하게 한다고 해도 이를 방치해야 하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모든 영역에는 공공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standard)이 존재하며, PCC 역시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에서도 PCC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PCC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시민운동가이자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Peter Tatchell

은 “언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보다 힘 있는 법정기관이 PCC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취향을 비방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른 내용(Gately의 최종 사인은 ‘폐부종에 의한 자연사’였지만, Moir는 Gately의 죽음이 동성애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칼럼 작성)을 유포한 행위 등 명백히 PCC 권고 사항을 벗어난 보도에 대해서조차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기력한 PCC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며 PCC를 비난했다. 보수성향의 온라인 저널리스트 Matthew Cain 역시 “개인적으로 PCC의 이번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PCC는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새롭게 쌓아야 하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

다. 이것이 PCC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PCC의 역할과 공익적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통해 PCC의 역할에 대해 깊은 회의를 나타내었다.

이번 PCC 결정의 핵심 쟁점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이 상충하는 경우 언론이 어떤 기준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PCC는 편집자 권고 사항(Editor’s Code of Practice) 12번 i항에 “언론은 반드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어떠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편견을 갖게 하거나 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그동안 영국 언론에서 자주 문제시 되어왔던 사회적 소수자 계급 - 소수 종교(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및 인종적 소수자들(인도계, 파키스탄계, 중국계, 흑인 등) - 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에 면죄부를 발급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소수 집단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요즘,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충돌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자율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 축구국가대표 선수 모친의 절도행위는 공공의 알권리 대상 돼

잉글랜드 국가대표 축구선수 John Terry는 일간지 The Sun 2009년 3월27일자 등에 게재된 그의 모친 Sue Terry와 그의 장모 Sue Poole이 쇼핑 센터에서 약 1,450파운드(한화 약 280만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PCC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The Sun 측은 “존 테리의 모

친과 장모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그들이 물건을 훔친 쇼핑센터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후원업체인 Tesco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정장을 제공하는 Marks & Spencer라는 점에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존 테리와 그의 가족들은 마땅히 도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C는 결정문을 통해 존 테리의 모친과 장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물건을 훔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존 테리가 국

가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사가 의도적으로 존 테리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PCC는 특히 결정문에 그가 현재 영국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축구 선수라는 점, 그리고 그의 가족들 역시 그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넉넉한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에서 공공의 알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동향]

Anti-SLAPP 법률, 과중한 변호사 비용으로부터 저널리스트 보호

최근 미국에서는 Anti-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소송)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주(州)법 덕분에 과중한 변호사비용 부담을 덜어 준 건의 사건이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The News Media & The Law(2009년 가을호)에 의하면, California 소재

Chapman 대학의 Susan Paterno 교수가 American Journalism Review에 Santa Barbara News-Press를 인수한 Wendy McCaw 씨에 관한 글을 실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으나 California주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냈다고 한다.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Paterno 교수는 신문사를 인수한

McCaw 씨가 자기 신문사의 전·현직 직원들과 몇몇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썼다. Paterno 교수는 자신이 McCaw 씨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수많은 변호사들이 명기된 명예훼손 소장들

받아야 했다. 그러나 Paterno 씨는 California 주법의 Anti-SLAPP 법률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즉각적인 기각을 얻어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률 덕분에 소가 기각된 후 대부분의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nti-SLAPP 법률은 특정인이나 회사 또는 계획 등에 대해 비판하는 자를 위협해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의 소송으로부터 비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4월 Massachusetts주 Wareham Observer사도 주법의 Anti-SLAPP 법률을 성공적으로 적용받았다. Wareham Observer지는 마을의 경찰서장의 업무상 책임에 대해 비평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뉴욕에서는 Richard Ottinger 전 민주당 대표가 신문사 웹사이트에서 자신을 비판한 익명의 논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

원은 Anti-SLAPP법을 적용, 소를 기각한 바 있다. 그 논평자는 Ottinger 씨 부부가 해안가에 집을 건축하는 것을 승인받기 위해 지대설정위원회에 허위문서를 제출한 혐의와 뇌물혐의로 기소되자 이들을 비판했었다.

그러나 모든 주가 Anti-SLAPP 법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의 28개주에는 있지만 나머지 22개주에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주마다 Anti-SLAPP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행위나 적용요건도 제 각각이다. 예를 들면, California주와 Illinois주 그리고 Louisiana주는 청원의 성격을 따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Anti-SLAPP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New York주의 경우 정부기관으로부터 특하나 지대설정 변경, 임대차, 면허, 증명 등 그밖에 사용이나 활동 허가 따위를 얻어내기 위해 지원한

자 또는 이미 허락을 득한 사람이 소송의 원고인 경우에만 Anti-SLAPP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법을 적용받으려면 그 행위가 공적인 청원 및 참여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보여야 한다.

이렇게 Anti-SLAPP 법이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연방 Anti-SLAPP 프로젝트'라는 단체가 Anti-SLAPP 법률을 연방법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발언자가 어디에서 말하느냐 혹은 어디에서 피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SLAPP 사건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되어야 하며 변호사 비용 면제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저널리스트도 방패법(shield law)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인터넷 블로그들이나 온라인 저널리스트와 같은 비전통적 저널리스트들을 연방 방패법이 보호하는 저널리스트 개념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The News Media & The Law(2009년 가을호)에 의하면, 이러한 논란의 발단은 상원 사법위원회가 지난 9월 중순 저널리스트의 개념을 '미디어 회사나 이를 운영하는 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이거나 그들을 위해 일하는 독립계약자'로 한정하는 뉴욕 출신의 민주당 Chuck Schumer 상원의원의 방패법 개정안을 채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수많은 블로그들과 학생 저널리스트들 그리고 심지어 소액의 금전을 지급 받는 잡지나 신문의 프리랜서들조차도 방패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미디어 옹호론자들은 저널리스트의 개념은 가능한 폭넓은 의미로 정의되

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마침내 지난 해 10월말, 미디어옹호론자들과 오바마 행정부는 수많은 협상 끝에 저널리스트가 봉급을 지급받는 피고용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배제된 연방 방패법의 새 버전을 도출해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공중에게 살포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누구든지 '기자 특권(a reporter's privilege)'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최근 들어 뉴스룸 예산이 긴축됨에 따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보도의 공백을 기동성 있는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채워가고 있는 현실과 독립적인 웹사이트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저널리즘을 저널리즘의 한 부류로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한 결과로 평가한다.

방패법은 기자들이 정부나 다른 고소인들로부터의 소환장에 직면해 비밀 취재원과 취재자료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받을 경우 이 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그 법리는 만일 저널리스트들이 소환장에 따라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 받게 되면 뉴스의 수집과정이 위축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의 정보접근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방패법 옹호론자들은 저널리스트를 그들의 역할 - 그들이 봉급을 받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저널리즘의 일종인지 아닌지 -에 따라 정의하는 최근의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접근은 1987년 Manhattan의 연방항소법원이 von Bulow 사건에서 전개했던 것과 유사하다. 그 당시 법원은 기자로서의 특권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특권을 주장하는 자는 취재자료를 이용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살포하고자 의도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의도가 뉴스수집 과정 개시시점에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